

# 퇴비 부숙도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방안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1 환경부 | 퇴비 부숙도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간 운영

- ◎ 기본원칙 :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농가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계도기간 운영 행정 절차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29.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계도기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 유예*            * 연 1~2회 부숙도 검사,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비 살포 행위</li> </ul>
보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도기간이라도 미 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 민원 유발(2회 이상),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 가능</li> </ul>

###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주체별 역할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별 퇴비 부숙도 관리 이행진단서 작성            – 교육·컨설팅·부숙도 검사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가 실천력 제고         </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별 이행진단서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지원            •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통해 농가별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가용 자원 연계를 통해 농가별 문제점 해소         </li> <li>• 부숙도 대상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 교육, 컨설팅 지원</li> </ul>
농협 (축산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농가 홍보 및 현장 컨설팅 등 행정 지원            – 축산농가 이행진단서 작성 지원 등         </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기관 TF를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 추진</li> </ul>

**2 환경부****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 규정 완화****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음
  -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가축을 사육하는 곳으로 가축분뇨법 제2조에 따르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방목지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사육의 적용대상 시설이 아님
- (문제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법상 해당하지 않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가축사육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신·증축을 불허

**2. 건의사항**

-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시·군 조례 일괄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100m<sup>2</sup>미만으로 퇴비사를 신·증축 시 농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 제한 해소 요망

**3. 개선방안**

-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기 유권해석('20.1.10)
- 처리시설 소재지, 처리방법 등의 변경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 규모 변경 및 처리공법 등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

구분	현황	조치사항
공통사항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타법에 위법이 없어야 함	
처리시설 거리제한	축사와 달리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이 아님	
처리시설 규모 확대	자원화표준설계도 규격 안에서 탄력적으로 설치·운영과 확대 가능 (변경신고 필요)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시·군·구)에 관련내용 시달 필요
처리시설 구조개선	동일 건물 또는 필지 내에서 위치변경 및 구조개선 가능	

**3 농식품부****마을형 공동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농지에 설치가능 여부****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축사 및 그 시설과 연접한 부속시설(분뇨처리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자유롭게 농지에 설치 가능
- (문제점) 축사의 부속시설은 연접부지에 설치 가능하나 이격부지에서는 설치 불가하여 퇴비사 확보에 어려움
  - \* 농지용행위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자유롭게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자기소유의 농지에 영농행위 가원칙→농지소유·임대차 제도훼손방지

**2. 건의사항**

-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사 등 농지이용행위에 포함하여 농지에 설치 가능토록 제도개선 요망

**3. 개선방안**

- ◎ 관련규정(법령) 검토
- 행위제한 (영 제29조제5항제6호) 「가축분뇨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
- 농지전용 (법 제34조제1항) 축사(부속시설) 외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
- 농지일시사용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 용 시설은 농지 복구 조건으로 일시사용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영 별표2 제3호라목) 「가축분뇨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100% 감면
- ◎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사는 「가축분뇨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연접부지는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고, 이격부지에 설치 시 농지전용 필요
- 따라서, 마을형 공동퇴비사, 퇴비사는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전용허가를 거쳐 설치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감면 가능

## 별첨

**퇴비 부속도 대상 농가 이행진단서**

① 농장명	(농가명: )				② 연락처		
③ 농장주소							
④ 축종	⑤ 평균 사육두수						
⑥ 배출시설 면적	1동	m <sup>2</sup>	5동	m <sup>2</sup>	⑦ 퇴비사 면적	1동	(가로 m × 세로 m)
	2동	m <sup>2</sup>	6동	m <sup>2</sup>		2동	(가로 m × 세로 m)
	3동	m <sup>2</sup>	7동	m <sup>2</sup>		3동	(가로 m × 세로 m)
	4동	m <sup>2</sup>	계	m <sup>2</sup>		계	m <sup>2</sup>
⑧ 분뇨처리형태 : <input type="checkbox"/> 자가처리( %) <input type="checkbox"/> 위탁처리( %) ↳ 자가처리하는 경우 : 퇴비화, 액비화, 정화 ↳ 위탁처리업체명 : 퇴비( ), 액비( ), 정화( )							
⑨ 교반장비 보유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장비를 보유한 경우 : 트랙터 대, 관리기 대, 스키드로더 대, 굴삭기 대, 기타 대							
⑩ 깔짚 및 퇴비 교반 여부 : <input type="checkbox"/> 교반함, <input type="checkbox"/> 교반안함 ↳ 교반하는 경우 : 깔짚 회/월, 퇴비 회/월							
⑪ 미생물제 사용 여부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안함 ↳ 사용하는 경우 : 기축 급이, 축사 바닥 깔짚에 살포, 퇴비더미에 살포							
⑫ 퇴비 부속관리 교육 참석 여부(연간 1회 이상 교육 참석)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미 참석 ↳ 미 참여한 경우 교육참석 계획 : 시군 부속도 교육( 월), 농축협교육( 월), 축산종자사 교육( 월)							
⑬ 부속도 검사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 실시 ↳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 작성							
대상기준		1차결과		2차결과		미 실시 경우 검사계획	월
⑭ 부속도 컨설팅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 실시 ↳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작성							
컨설팅	날짜	지적보완사항			농가이행 결과		
1차		○ ○			○ ○		
2차		○ ○			○ ○		

⑯ 퇴비사 탄용도 사용 여부 :  사용함,  사용안함 → 탄용도 사용시 조치계획 작성

개선계획	
------	--

⑰ 퇴비 부속도 기준 이행계획(해당 칸에 “√” 표시 및 계획 작성)

- (가) 교반장비 및 퇴비사 모두 보유( ), (나) 교반장비 부족( ),  
 [다] 퇴비사 공간 부족( ) \*중복 체크 가능

시군  
점검  
결과

(가)~(다)에 “√” 표시한 경우 작성	부속 관리	수분관리 (톱밥 등 사용)		축사 내부(깔짚)	m <sup>3</sup> /월	퇴비사	m <sup>3</sup> /월	시군 점검 결과	
		미생물살포		축사 내부(깔짚)	회/월	퇴비사	회/월		
		교반주기		축사 내부(깔짚)	회/월	퇴비사	회/월		
[나]에 “√” 표시한 경우 작성	교반 장비 확보	장비 구입	20년 월	임대 (위탁)	농기계임대사업소( ), 농기계은행( ), 민간 임대( ), 퇴비유통조직 위탁관리( )				
		장비명		임대시기	매월 일정	장비명			
				위탁관리	업체명	교반주기	회/월		
[다]에 “√” 표시한 경우 작성	퇴비사 확충	신증축	20년 월	위탁	공동자원화시설( ), 공동퇴비장( ), 민간퇴비장( ), 공공처리시설( )				
		면적(m <sup>2</sup> )		계약예정	20년 월	위탁량(m <sup>3</sup> /일)			
				업체명					

⑯ 전담 관리자 지정

시군	부서		직급		성명	
축협	부서		직급		성명	

⑰ 지도점검 현황 \* 부속도 연 1~2회 검사, 기준 적합 퇴비 살포, 이행진단서 추진상황 점검

점검일	점검자	지적사항	농가이행결과	확인자	확인일